

# **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**

**2013. 2.**

**국 토 해 양 부**  
**[선원정책과]**

##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사 유
( 신 설 )	<u>제1조의3(선원) 법 제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항만노무자, 선박수리기술자, 문화, 예술, 체육 및 교육 종사자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 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.</u>	○ 개정 선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원의 범위에서 제한함에 따라 규정
( 신 설 )	<u>제3조의6(선장의 직접지휘 대행직원의 범위) 법 제9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”이란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등 항해사,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운항장 또는 그 밖에 이들과 같은 수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원을 말한다.</u>	○ 현행 선원법에서는 선장의 재선 의무와 지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에서 선장에 대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 ○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의무 예외를 인정함  ※ 대행이 가능한 직원의 범위 - 1등항해사,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운항장, 그 밖에 이들과 같은 수준의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
현행	개정안	사유
<p><b>제5조(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)</b> ① 법 제40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2. 「해운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(원양어획물운반업만 해당한다)의 등록을 한 자</p>	<p><b>제5조(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)</b> ① 법 제40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”란 “<u>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</u>”를 말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3. 8.20일 발효되는 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에서 모든 선원에 대해 외국에서의 자국 송환 의무를 선박소유자에게 강제하고 있음</li> <li>○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선원 송환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“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”에 대해 송환 보험을 가입토록 함</li> </ul> <p>※해상노련 등에서는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선원 등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송환보험을 가입토록 개정안에 포함토록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육상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송환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</li> <li>- 아울러, 현행 선원법에서도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선원을 거주지 또는 계약체결지로 송환토록 규정하고 있음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사유
<p><b>제21조(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) ①</b>  법 제6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”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기관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. 다만,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<u>선박</u> 및 「해사안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.</p>	<p><b>제21조(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) ①</b>  법 제6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”이란 총톤수 500톤이상 또는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추진력 750킬로와트이상의 선박을 말한다. 다만,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<u>선박</u>, <u>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</u> 및 「해사안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만법에 의한 예선의 경우 종래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'11. 12월 개정된 선원법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항해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부원을 추가로 승선토록 하여야 함</li> <li>○ 다만, 동 선박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서만 운항을 하고 있어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최소정원 이외의 부원의 추가 승선이 필요 없음</li> <li>○ 따라서 법 제64조의 항해당직 부원 등의 승선대상 선박에서 항만법의 의한 예선은 제외토록 함</li> </ul>
<p>(신설)</p>	<p><b>제22조(선박조리사의 자격 등) ①</b> 법 제76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”(이하 “선박조리사”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,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</li> <li>2.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, 국토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5년 2. 6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조리사의 자격제도를 규정</li> <li>○ 선박조리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노·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사유
	<p><u>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</u></p> <p>3. <u>3년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</u></p>	
	<p>② <u>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76조 제2항에 따른 선박조리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조리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조리경험을 갖춘 경우</u></p> <p>2. <u>제1항과 동등이상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	
	<p>③ <u>선박소유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.</u></p>	<p>○ 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에서 18세 미만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조리사로서의 승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</p>
	<p>④ <u>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해선이 아닌 선박이나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대신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승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○ 승무정원이 10명미만인 선박의 경우 선박조리사 승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</p> <p>※ 2006 해사노동협약“에서도 승무정원이 10명미만인 선박에 대해 선박조리사 승무를 면제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<p><b>제30조(유족의 순위)</b> ①유족보상(장제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,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<u>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, 배우자에 있어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하며,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,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,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,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.</u></p>	<p><b>제30조(유족의 순위)</b> ①유족보상(장제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,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<u>그 기재된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배우자,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,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,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,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,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우자, 자녀 및 부모의 순위대로 유족을 정할 경우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은(별거 등) 배우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되어 실제 부양이 필요한 자녀와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(천안함 사례)</li> <li>※ 동 규정은 선원노동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규정 마련</li> </ul>
<p>(신설)</p>	<p><b>제43조의2(선원복지기본계획)</b> 법 제107조제1항 제10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선원과 선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선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그 밖에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에서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동 계획의 수립시기와 주요내용에 대해 규정</li> <li>○ 선원복지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</li> </ul>
<p>(신설)</p>	<p><b>제48조(어선의 근로감독주기)</b>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어선에 대한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에서 상선의 경우 매 3년마다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토록 규정함</li> <li>○ 이에 따라 어선의 근로형태 등을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사유
(신설)	<p><u>제49조의2(선내불만처리절차)</u>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선원의 선내불만 제기 방법과 절차</li> <li>2. 선원의 선내불만 처리를 위한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지정</li> <li>3.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임무와 역할</li> </ol>	<p>감안하여 매 5년마다 어선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토록 함</p> <p>○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에 따라 선원의 선내불만제기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, 선내불만제기시 선박소유자가 처리절차를 정하도록 규정</p> <p>○다만, 동 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선내불만처리를 도모함</p>
(신설)	<p><u>제49조의3(상세점검의 범위)</u>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상세점검(이하 “상세점검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과 같다.</p>	<p>○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점검시 기본점검결과 상세점검이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함</p> <p>○상세점검의 범위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포함된 14가지 항목과 동일하게 규정(시행규칙 제58조의 2와 동일하게 적용)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(신설)	<p><b>제49조의4(외국선박에 대한 조치) ①</b> 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상세점검의 결과를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</p> <p>2. 상세점검의 결과와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 등을 해당선박의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세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가. 대한민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에 결함사항의 통보</p> <p>나.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의 국가의 정부에 대해 상세점검 결과의 통보</p> <p>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보고서를 작성,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동 선박의 기국이 보내온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낼 수 있다.</p>	<p>○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상세점검결과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협약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</p>
	<p>④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 정지 등의 조치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</p>	<p>○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외국적선박의 협약 위반이 중대할 경우 동 선박에 대해 출항 정지를 명할 수 있음</p>

현행	개정안	사유
	<p>는 영사에게 통보</p> <p><u>나. 가능한 경우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 이내의 회신 요청</u></p> <p>다. 대한민국 선박소유자 및 선원단체에 통보</p> <p>2. 출항정지와 관계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선박의 출항을 허가할 수 있다.</p>	<p>○ 다만, 출항정지시 협약의 규정대로 기국의 대표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함</p>
(신설)	<p><b>제49조의5(외국선박의 선원불만처리절차) ①</b></p> <p><u>법 제134조에 따라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해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</u></p> <p>2.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</p>	<p>○ 국내항에 정박중인 외국선박의 선원이 선원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“2006 해사노동협약”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</p>
	<p>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상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
	<p>③ 제2항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9조의4제1항부터</p>	

현행	개정안	사유
	<p>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법 제13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
	<p>③ 국토해양부장은 불만사항을 신고한 선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
<p><b>제50조(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의무)</b>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영사는 선원수첩·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정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행한다.</p>	<p><b>제50조(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의무) ①</b>         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영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9조에 따른 선장에 대한 재외국민의 송환명령</li> <li>2. 외국에서 발생한 법 제21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</li> <li>3.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의 접수 및 수리</li> <li>4. 법 제4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승·하선 공인</li> <li>5.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직무상 사고 발생사실 보고 접수</li> <li>6. 법 제129조에 따라 외국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,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선원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접수</li> <li>7. 기타 외국에서 대한민국선박에 승선했던 선원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규정상 해외영사는 해양항만관청이 수행하는 선원수첩 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</li> <li>- 다만, 선원관련 업무의 특성상 해외영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</li> <li>- 따라서 외국에서의 선원관련 법 적용에 있어 신속하고, 체계적인 대응 또는 조치가 어려움</li> <li>○ 해외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사유
	<p><u>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보</u></p>	
	<p><u>② 대한민국영사는 제1항제2호, 제3호,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
	<p><u>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대한민국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○ 해외영사를 통해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해외영사에 다시 송부토록 함</p>
	<p><u>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한민국영사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선원, 해당 선박의 선장 및 해당국의 관련기관 등에게 알릴 수 있다.</u></p>	<p>○ 해외영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치결과를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, 해당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</p>
	<p><u>⑤ 대한민국영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6조 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</u></p>	
	<p><u>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	사유
제52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	제52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좌동)	
(신설)	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른 직무상 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“해양안전심판원장”에게 위임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</li> <li>○ 선원관련 사고의 조사 등의 업무 일원화를 위해 법 선원의 직무상 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“해양안전심판원장”에게 위임함</li> </ul>
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.	<p>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의 시행 및 선박조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</li> </ol>	○ 선박조리사자격제도 규정에 따라 동 자격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도록 함
③ ~ ④ (생략)	④ ~ ⑤ (좌동)	

현행	개정안	사유
(신설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제5조제1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③ 제1조의3, 제3조의6, 제43조의2, 제48조, 제49조의2, 제49조의3, 제49조의4, 제49조의5, 제52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「2006 해사노동협약」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의 규정은 2015년 2월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유족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족의 순위가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</p>	